

남양주시, 의정부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으로 시중시세 85~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 (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H에서는 콜센터(02-3416-3777,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이번 공고는 2017.10.27, 2018.7.11, 2018.11.23, 2019.1.29, 2019.5.17, 2019.7.12, 2019.9.10, 2020.04.08 입주자모집 (재)공고 후 계약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입니다.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09.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LH) 남양주,의정부시 청년.신혼매입임대 추가
주택관리번호	2020980110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당첨된 동·호가 배정되어 발표되며, 발표 후 해당 주택열람 후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현재 보유주택 및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 하여 모집단위별 현재 입주 가능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1 모집일정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

'20.09.18(금)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20.10.05(월)~ '20.10.15(목) 서류제출 (신청자 전원)

'20.10.05(월)~ '20.10.15(목) 당첨자 발표

 \Rightarrow

'20.11.27(금) 16:00 이후 계약체결

 \Rightarrow

'20.12.09(수) ~12.11(금)

2 임대대상 주택

			소재지	준공	전용	단지	단지	임대	모집시	네대수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시기	면적 (m²)	규모 (세대수)	최고 층수	호수	당첨	예비	912
		화도읍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05.12	59	758	15층	4	4	15	재공고
		오납읍	오남 쌍용스윗닷홈지티 2단지	'05.08	59	451	15층	1	1	5	재공고
			평내2차대주파크빌	'05.08	59	606	20층	6	6	20	재공고
경 기	남양주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04.07	59	1,050	20층	22	22	70	재공고
기 도	□ÖT	2.412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	′04.09	59	738	19층	7	7	20	재공고
			평내마젤란21아파트	'05.10	59	499	20층	4	4	15	재공고
		호평동	호평마을 우미이노스빌	′04.12	59	352	20층	1	1	5	재공고
		조심은	호평파라곤	′10.12	59	1,275	20층	1	1	10	재공고
			남양주시 합계					46	46	160	
		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	'08.01	59	673	23층	17	17	60	재공고
			의정부 에스케이뷰(SK뷰)	'07.06	59	1,019	24층	1	1	5	재공고
			가재울일신건영휴먼빌	'07.09	59	222	22층	1	1	5	재공고
			주공그린빌3단지	'03.08	59	820	20층	13	13	50	재공고
경 기	의정부	금오동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04.09	57	482	23층	3	3	10	재공고
기 도	- 16⊤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	'07.11	59	1,111	25층	3	3	10	재공고
		녹양동	녹양힐스테이트	'06.08	59	1,196	25층	1	1	5	재공고
		신곡동	주공그린빌4단지	'03.08	59	606	20층	14	14	50	재공고
		신국중	한일유앤아이아파트	'06.03	59	700	24층	10	10	30	재공고
	장암동 장암1차푸르지오 '04.10 59 494 22층							1	1	5	재공고
	의정부시 합계							64	64	230	
	남양주시, 의정부시 총 합계							110	110	390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정보는 첨부파일 "(20200918)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공급대상 단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 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 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소재지						ē	임대보증금(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차수	면적 (m²)	합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원)
		화도읍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	59	101,000,000	10,100,000	90,900,000	172,910
		오납읍	오남 쌍용스윗닷홈지티 2단지	-	59	101,500,000	10,150,000	91,350,000	91,030
			평내2차대주파크빌(5호)	1차	59	111,593,000	11,159,000	100,434,000	236,350
			평내2차대주파크빌(1호)	2차	59	112,250,000	11,225,000	101,025,000	230,950
경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	59	109,259,000	10,925,000	98,334,000	228,700
기	남양주	평내동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5호)	1차	59	115,015,000	11,501,000	103,514,000	228,730
도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2호)	2차	59	117,750,000	11,775,000	105,975,000	226,160
			평내마젤란21아파트(3호)	1차	59	116,666,000	11,666,000	105,000,000	221,520
			평내마젤란21아파트(1호)	2차	59	114,000,000	11,400,000	102,600,000	234,750
		호평동	호평마을 우미이노스빌	-	59	133,000,000	13,300,000	119,700,000	303,950
			호평파라곤	-	59	146,500,000	14,650,000	131,850,000	313,330
		가능동	브라운스톤 흥선(3호)	1차	59	113,625,000	11,362,000	102,263,000	237,050
			브라운스톤 흥선(5호)	2차	59	115,722,000	11,572,000	104,150,000	208,670
			브라운스톤 흥선(9호)	3차	59	116,000,000	11,600,000	104,400,000	198,630
			의정부 에스케이뷰(SK뷰)	-	59	121,000,000	12,100,000	108,900,000	229,890
			가재울일신건영휴먼빌	-	59	102,500,000	10,250,000	92,250,000	175,000
74			주공그린빌3단지(12호)	1차	59	116,087,000	11,608,000	104,479,000	207,120
경 기	의정부		주공그린빌3단지(1호)	2차	59	116,687,000	11,668,000	105,019,000	185,440
기 도	<u> ~l∂⊤</u>	금오동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	57	110,000,000	11,000,000	99,000,000	170,000
-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2호)	1차	59	124,083,000	12,408,000	111,675,000	174,940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1호)	2차	59	123,083,000	12,308,000	110,775,000	192,000
		녹양동	녹양힐스테이트	-	59	121,666,000	12,166,600	109,499,400	195,480
		시고도	주공그린빌4단지	-	59	110,632,000	11,063,000	99,569,000	185,130
		신곡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	59	111,192,000	11,119,000	100,073,000	189,820
		장암동	장암1차푸르지오	-	59	139,000,000	13,900,000	125,100,000	217,54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시중 전세가격의 85~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85~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최초 당첨자계약 시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 적용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차수가 구분 된 단지(평내2차대주파크빌 총6호,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 총7호, 평내마젤란21 총4호, 브라운스톤 흥선 총17호, 금오동 주공그린빌3단지 총13호,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 총3호)의 경우 당 첨되는 동호에 따라 임대조건 차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수 임의선택 불가)

3-1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선택사항)

		임디	보증금 분닙	·시 임대조건	[(원)	전환가능	최대전환 임대조	
단지명(<mark>신청단위</mark>)	차수	납부기한	2020.12.11 (계약체결전)	2021.2.8 (입주전)	2021.8.8 (입주후 6개월 경과)	보증금 한도액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합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2)	(<u>:</u> :)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	101,000,000	10,100,000	40,400,000	50,500,000	16,000,000	117,000,000	106,240
오남 쌍용스윗닷홈지티 2단지	-	101,500,000	10,150,000	40,600,000	50,750,000	7,000,000	108,500,000	61,860
평내2차대주파크빌(5호)	1차	111,593,000	11,159,000	44,637,000	55,797,000	22,000,000	133,593,000	144,680
평내2차대주파크빌(1호)	2차	112,250,000	11,225,000	44,900,000	56,125,000	22,000,000	134,250,000	139,280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	109,259,000	10,925,000	43,703,000	54,631,000	21,000,000	130,259,000	141,200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5호)	1차	115,015,000	11,501,000	46,006,000	57,508,000	21,000,000	136,015,000	141,230
평내마을 신명스카이뷰(2호)	2차	117,750,000	11,775,000	47,100,000	58,875,000	21,000,000	138,750,000	138,660
평내마젤란21아파트(3호)	1차	116,666,000	11,666,000	46,666,000	58,334,000	21,000,000	137,666,000	134,020
평내마젤란21아파트(1호)	2차	114,000,000	11,400,000	45,600,000	57,000,000	22,000,000	136,000,000	143,080
호평마을 우미이노스빌	-	133,000,000	13,300,000	53,200,000	66,500,000	29,000,000	162,000,000	183,110
호평파라곤		146,500,000	14,650,000	58,600,000	73,250,000	24,000,000	170,500,000	213,330
브라운스톤 흥선(3호)	1차	113,625,000	11,362,000	45,450,000	56,813,000	당침	험자 개별안내	
브라운스톤 흥선(5호)	2차	115,722,000	11,572,000	46,288,000	57,862,000	당침	험자 개별안내	
브라운스톤 흥선(9호)	3차	116,000,000	11,600,000	46,400,000	58,000,000	19,000,000	135,000,000	119,460
의정부 에스케이뷰(SK뷰)	-	121,000,000	12,100,000	48,400,000	60,500,000	22,000,000	143,000,000	138,220
가재울일신건영휴먼빌	-	102,500,000	10,250,000	41,000,000	51,250,000	16,000,000	118,500,000	108,330
주공그린빌3단지(12호)	1차	116,087,000	11,608,000	46,434,000	58,045,000	19,000,000	135,087,000	127,950
주공그린빌3단지(1호)	2차	116,687,000	11,668,000	46,674,000	58,345,000	17,000,000	133,687,000	114,600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	110,000,000	11,000,000	44,000,000	55,000,000	16,000,000	126,000,000	103,330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2호)	1차	124,083,000	12,408,000	49,633,000	62,042,000	16,000,000	140,083,000	108,270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1호)	2차	123,083,000	12,308,000	49,233,000	61,542,000	18,000,000	141,083,000	117,000
녹양힐스테이트	-	121,666,000	12,166,600	48,666,000	60,833,400	18,000,000	139,666,000	120,480
주공그린빌4단지	-	110,632,000	11,063,000	44,252,000	55,317,000	17,000,000	127,632,000	114,290
한일유앤아이아파트	-	111,192,000	11,119,000	44,476,000	55,597,000	18,000,000	129,192,000	114,820
장암1차푸르지오	-	139,000,000	13,900,000	55,600,000	69,500,000	20,000,000	159,000,000	134,200

- 임대보증금 분납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보증금** 전환이율은 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맞벌이인 경우 140%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예비포함)·한부모가족·청년·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 기간이 12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한부모가족의 신청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①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0.09.19 ~ 2001.09.18)
청년 ① 또는 ②	②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 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대학교 인정 기준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생)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 1. 「고등교육법」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 1.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2. 「초·중등교육법」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특수학교
- 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

■ 소득·자산 기준

	구분		기준									
		- 해당 세대의 소 · [배우자(예비신혼					우에는 140					
		소득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3,174,176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3,703,206	6,131,733	7,877,656	8,716,879	9,713,696	10,631,716				
		* 6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786,87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18,021원) 추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	부동산 가액	• <u>해당세대(세대구성원)</u> 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이 21,550만원 이하										
산	자동차 가액	• <u>해당세대(세대구성원)</u> 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316만원 이하 * 소득 및 자산, 주택소유여부의 자세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하단 참조										

5 입주자 순위

■ 입주자 선정 순위

대상	신청 자격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인(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1순위 경합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⑥호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점 3점 2점
②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공급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신청인의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예비신혼부부는 적용하지 아니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

6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불가능)

■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PC인터넷 및 모바일)	서류제출 (등기우편) (신청자 전원 제출)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대상자만)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0.10.05(월) 10:00 ~ 10.15(목) 16:00	'20.10.05(월) ~ 10.15(화)	자격심사 후 부적격 소명	'20.11.27(금) (16:00이후)	′20.12.09(수) ~12.11(금)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	※ 등기우편접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서울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청년신혼 담당자 앞	※ 대상자만 개별안내	※ 확인 - LH청약센터 - ARS (1661-7700)	※ 현장계약(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12, LH서울본부 1층임대공급운영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청약 및 서류접수는 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PC, 모바일로만 가능) (2020.10.05(월) 10:00 ~ 2020.10.15(목) 16:00)
 - ※ 본 공고는 청약신청 후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7. 서류제출안내 참고)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또는 LH청약센터 앱 설치·실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클릭 → 주거복지 클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클릭→
"상세지역"을 보고 원하는 단지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인터넷(PC) 신청자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유의사항

- o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u>누락 등 착오입력에</u> <u>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u>
- o 기타사항
- . 인터넷(PC) 및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10.5(월) 10:00부터 접수마감일 '20.10.15(목)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일인 '20.10.15(목)은 16시까지임을 유의하시어 청약 마감시간 까지 접수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한 : 2020.10.05(월) ~ 2020.10.15(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0.09.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 본 공고는 별도의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과정 없이 모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되며, 인터넷(PC, 모바일)로 청약신청 후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2020.10.15(목)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서류미비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기한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우)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서울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청년신혼 담당자 앞
 - ※ 봉투는 **대봉투**를 이용해주시고, 겉면에 <**청년신혼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종류 (각 1통씩 제출)

	분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필수	추가	게르이ㅠ	네이지, 걸바이바 이	발급처
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0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0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0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0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0	임신진단서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의료기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0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0	차상위 계층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0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 : 2020.09.18(발급관리번호 : 2020980110)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인터넷발급	청약기입은행 한국감정원
	0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맞벌이부부만 해당)	 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 영위 및「소득법」에 따라 사업소득 신고(세무서 발급) ※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형태로 근무 중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와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신고한 소득이 없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세무서등
	0	장애인등 록 증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주민센터
	부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u>혼인관계증명서</u>	주민센터
	2가족 서류	세대구성 확인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 세대구성 확인서 제출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공동신청 확인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에비시	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참부
1	근구구 서류	신분증 사본	예비배우자	
T /[ツ市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일 전일까지 미제출시 입주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제출	

※ 대리인 방문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추가 확인

-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 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 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당첨자 발표 : 2020.11.27(금), 16:00 이후
- 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 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 → 당첨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2020.12.09(수) ~ 12.11(금) (10시~16시, 점심시간12시~13시 불가)
- 동호열람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부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내방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리츠를 예금주로 형	한 계좌에 계약금이체, 현장수납 불가)				
본인 및 배우자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I	, 여권 등)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계약 시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기	나 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계약 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추가서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방법

■ 신청자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및 자산보유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8)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금액은 당사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9.18)에 산정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 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급여, 승무권되다면 다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법허구여 법호된 법호대사자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위소득조사 항목표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 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 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자산 보유액 산정 기준

• 자산 보유액 조사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구 분		가액산정 기준			
	71.0			단독각	두택	공시가격			
	건물		주거용건물	공동주	주택	공시가격			
				오피스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사급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족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1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등재된 경우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일한 주소인 경우 고 있는 경우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적격 소명

-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접수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제공기관 (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10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범위** : 세대구성원 전체("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체)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관련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 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 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무주택 인정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1 유의사항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주택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갱신계약자격은 무주택 및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이 기준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10년) 만료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공급신청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제한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기타사항	 주택소유여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② 02-3416-3777,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13시는 상담불가)

2020. 09. 18.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모집공고문 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 서명(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직접서명,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 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 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V	- 주민등록사항(성명,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내역
소득	V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V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V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재 6개월 [입주대 상재 5년 [계약재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 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시 전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암대 료 부과4역 압주시격 검증4년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u>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u> 6개월 [입주대상자] 암바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암바계약/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 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 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 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 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 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공동신청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 <u>동</u> 신청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 하기 위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신청인 (1), (2)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0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인)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세대구성 확인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아파트)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	
배우자		_	
		-	
		-	
		-	

2020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인)



[세대분리된 한부모가족만 제출] 세대구성 확인서

본인 및 세대분리된 6세이하 자녀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법령의 취지를 감안 해당주택의 입주시 아래와 같이 6세 이하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입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_	
자녀		-	
		-	
		-	
		-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